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함(안 부칙 제2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부칙에서 가지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